

[별표 4] <개정 2001.7.16>

업무대행자의 인력기준(제196조의2제1항제2호관련)

구 분	인 력 기 준
1. 법 제6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대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○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
2. 법 제65조의2제1항제4호의 업무대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사용시설 등의 설치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○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
3. 법 제65조의2제1항제5호의 업무대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원자력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○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원자력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○주 사무소외에 사업소를 별도로 두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방사선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원자력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또는 방사선안전규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인 이상